

건설 공사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에서 인근 주민이 일조, 조망권 등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대응 방안



상담요청

OO종합건설은 상업지역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바, 인근 주민이 소음, 먼지, 일조 및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에 대한 대응방안 질의



상담내용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음, 먼지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측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업지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 및 조망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원고가 일조 및 조망권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



2. 공사 현장에서 광케이블 파손에 대한 배상의무 여부



상담요청

OO종합건설은 상수도관 설치를 위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 신청하여 지하에 매설된 광케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고, 노면에도 표식이 존재하지 않아 굴착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 중 광케이블이 파손되자 광케이블업체가 복구비용 전액 배상 요구에 대한 질의



상담내용

광케이블 설치업체가 법규에 규정된 표지등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관리청에도 위치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하매설물 존재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도로에는 그와 같은 매설물 표지가 없어도 지하에 수도, 가스, 유류,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이 설치된 경우가 많고 특히 통신의 경우 해당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지점 등에 설치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케이블설치업체가 법령에 따른 표지를 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므로 과실정도가 감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